

투자위험등급:
3등급
[중간 위험]

동양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동양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0. 08.1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8.1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1조주
7. 모집(매출) 기간: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동양자산운용
본점(☎02-3770-1300 www.tyam.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회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7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7
가. 형태별 종류	7
나. 운용자산별 종류	7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7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7
마. 특수형태 표시	7
3. 모집(판매)예정금액	7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7
5. 인수에 관한 사항	7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7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8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8
4. 집합투자업자	8
가. 회사의 개요	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8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8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9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가. 투자 대상	9
나. 투자 제한	11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2
나. 수익구조	1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3

가. 일반위험	14
나. 특수위험	14
다. 기타 투자위험	14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5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6
가. 매입	16
나. 환매	16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회사재산의 평가	18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8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9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1
가. 이익배분	21
나. 과세	22
15. 발기인,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23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4
1. 재무정보	24
가. 요약재무정보	24
나. 대차대조표	26
다. 손익계산서	2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8
가. 연평균수익률	28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29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3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1
가. 회사개요	31
나. 주요업무	3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32
라. 운용자산 규모	3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3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33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3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3

가. 회사의 개요	33
나. 주요업무	3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4
가. 회사의 개요	34
나. 주요업무	34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5
가. 회사의 개요	35
나. 주요업무	35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6
가. 투자자 총회 등	36
나. 잔여재산분배	37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37
라. 손해배상책임	37
마. 재판관할	38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8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3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9
가. 정기보고서	39
나. 수시공시	4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2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42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42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42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3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채권혼합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중도환매가능)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계속 모집이 가능)
-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주

(주 1)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모집(판매)은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판매회사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6년 03월 27일	투자회사 최초설립
2006년 04월 13일	최초등록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1110)
2006년 04월 21일	변경등록 (판매회사 추가)
2006년 09월 19일	변경등록 (환매수수료 적용기간 단축 외)
2006년 10월 04일	변경등록 (판매회사 추가)
2007년 08월 28일	변경등록 (정관변경 - 주식투자대상 확대)
2008년 02월 29일	변경등록 (정관변경 - 채권 및 어음등급 상향 조정)
2009년 05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투자회사 명칭변경
2009년 09월 30일	투자대상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로 별도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회사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될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대표전화 : 02-3770-13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설정규모	
손경수	1962	채권운용	146개	54,243	- 동양증권 채권팀 (8년)

		본부장		역원	-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팀(5년) - 한국채권평가 채권평가본부장(5년) - 동양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현직)
이은영	1972	팀장	31개	4720 역원	- 한국투자신탁 조사분석팀(4년) -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전략실(4년)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4년) - 동양자산운용 리서치팀 팀장(현직)

주1) 이 투자회사의 운용은 **채권운용1팀**과 **리서치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채권운용본부 : 규모 2,180억원, 펀드갯수 : 3개
- 리서치팀 : 해당사항 없음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년도	성명	생년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2007.1~ 2010.6	이형복	1964	주식운용 본부장	- 한국투신운용(1990.8 ~ 2005.7) - 미래에셋자산운용(2005.8 ~ 2006.1) - 동양자산운용(2007.1 ~ 2010.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 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A-이상급)에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10%수준을,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	채권	40% 이상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주식	10% 이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 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⑥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주식과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위 ②의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
⑨	증권의 차입	회사자산총액의 20% 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
⑩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합계액이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⑪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1호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적용예외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④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⑤~⑪ 및 아래 “나. 투자제한”의 사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제한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OECD 국가의 국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등 - 자산총액의 20%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시가총액비중 까지: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1개월간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채권투자전략

① 기본운용전략

- 이자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금리 상승/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추가 수익 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주간 및 월간 전략 회의에 근거하여 금리 상승기에 Duration을 0.5에 가깝게 하고, 금리 하락기에 Duration을 1.5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평균적으로 Duration 1.0에서 유지합니다.
- 수익률곡선 전략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수익률곡선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시행, 안정적인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경제 지표 및 수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자산배분(Sector Allocation)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오를만한 자산에 투자비중을 늘리도록 합니다.
- 한편 이 투자회사는 우량 채권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에 회사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듀레이션: 채권의 평균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간의 가중 평균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가중합니다. 듀레이션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② 위험관리

i) 신용위험관리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공채, 은행채, 우량회사채(A- 이상) 위주로 구성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신용등급하락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합니다.

ii) 이자율 위험관리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 등 금리관련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펀드 듀레이션을 0.1~0.5로 하여 금리상

승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금리 상승 및 하락에 따른 듀레이션을 조절 할 것입니다.

iii) 유동성 위험관리

최초에는 10%이상 국공채, 동안채 등 유동성이 매우 높은 섹터를 보유하여 운용합니다. 이후 추가 유동성으로 2년 미만의 유동성 높은 은행채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보유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주식투자전략

- 당사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은 팀원간의 분화된 리서치에 근거한 합의제에 의해 판단 오류를 최소화 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회사 자산총액의 5%~10%수준으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0.05 * [KOSDAQ]) + (0.8 * [1년~2년(국공채)]) + (0.15 * [CALL])

○ 위험관리

- 펀드설정 초기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90%수준으로, 주식에 5%~10%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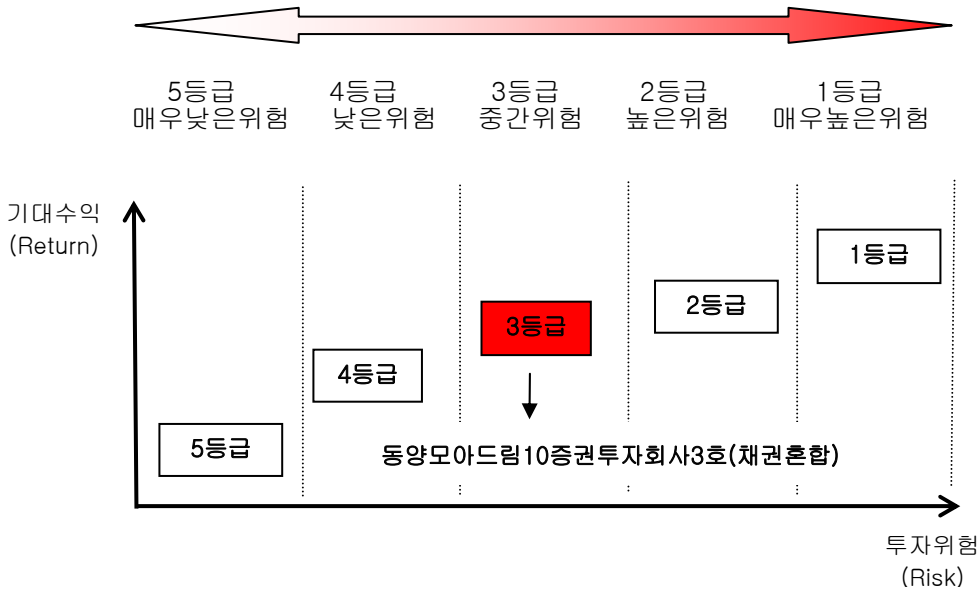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환매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합병/폐선/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자산총액의 80%~90%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10%수준으로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른 원본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 등을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함

니다.

-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채권 및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동양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 변동성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장내/장외파생상품 펀드로서 펀드수익변동성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폭의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 투자펀드
2등급	높은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는 펀드입니다.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므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 및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혼합형) 펀드, 인덱스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원금비보장형 ELF, 투기등급 및 정크 본드를 30%이상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3등급	중간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로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중간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주식에 50% 미만 투자하는 혼합형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F, 투기등급 30%미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4등급	낮은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국공채, 회사채(BBB-등급)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시장금리상승에 의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F
5등급	매우낮은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현금,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AA수준)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을 추구하지만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MMF 펀드

(주 1) 이러한 위험 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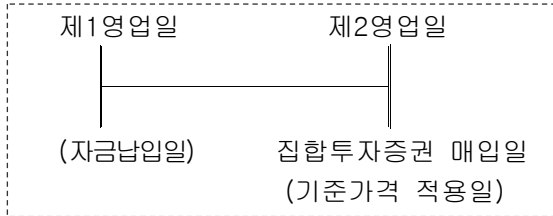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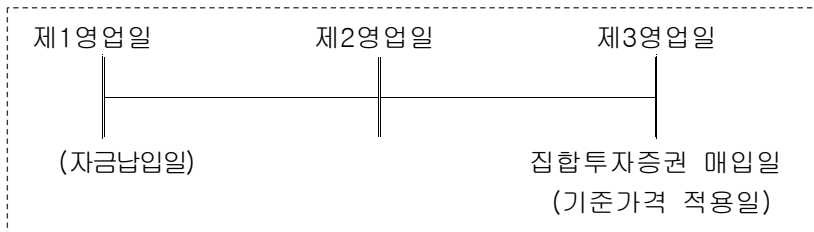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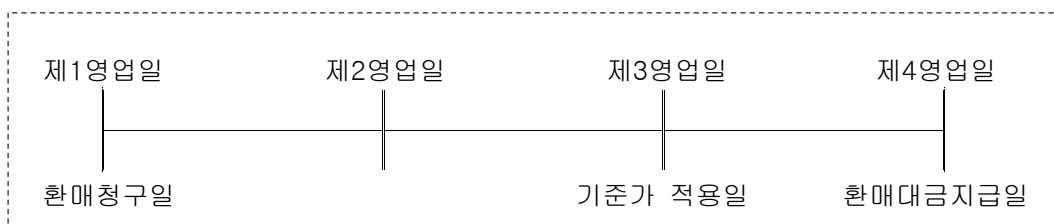
나. 환매

(1) 투자회사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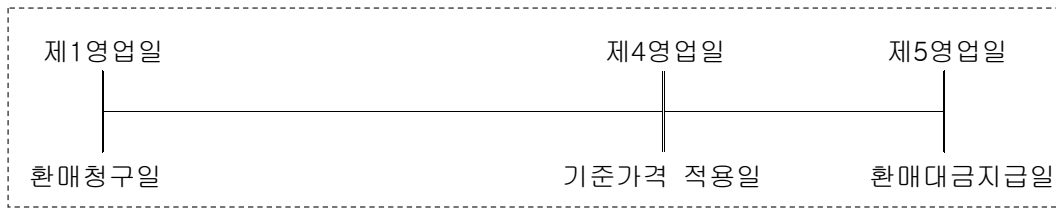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연간,%)	비고 (부담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 이익금 기준 징수에 따라)	6개월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4) 매입 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회사 주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권을 환매하고, 잔여주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

(6)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회사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주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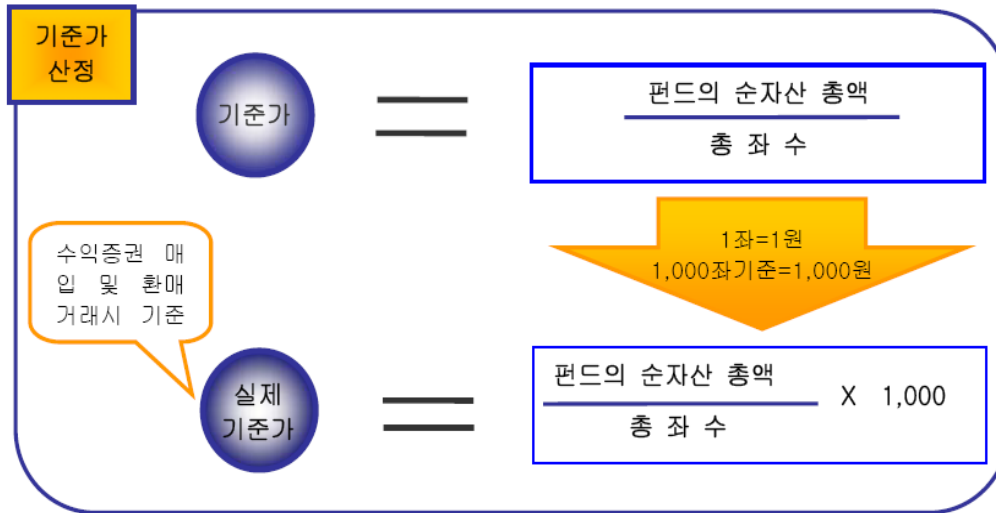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6개월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26%	최초설립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70%	
신탁업자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4%	
기타 비용	연 0.056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0862%	-
증권 거래비용	연 0.0187%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 비율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 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1	347	602	1,330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배분

주주는 투자회사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또한 투자회사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회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주주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계약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회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주주는 투자회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계약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주주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표기준가격** :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등 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1억주	결격사유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비고
감독이사	진 영 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주)캠퍼스21 회장 現)교원캠퍼스 감사 재직중	해당 없음	
	김 대 연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투자공사 근무 증권감독원 근무 벽산건설 사외이사	해당 없음	

다. 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1)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설립 후 최초의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법인이사: 지급하지 아니함
 - 감독이사: 월 15만원
- (2) 청산인의 보수: 각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회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3기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	성도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09.09.26)	(2009.03.26)	(2008.03.26)
운용자산	46,613,269,228	5,491,932,813	11,317,683,214
증권	45,557,473,827	5,428,266,543	11,293,695,46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055,795,401	63,666,270	23,987,748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89,708,804	225,324,205	82,751,327
자산총계	47,202,978,032	5,717,257,018	11,400,434,54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79,138,275	136,794,950	21,399,344
부채총계	379,138,275	136,794,950	21,399,344
원본	44,244,629,168	5,242,431,142	10,706,374,657
수익조정금	2,136,554,464	-182,983,175	216,391,641
이익잉여금	442,656,125	521,014,101	456,268,899
자본총계	46,823,839,757	5,580,462,068	11,379,035,197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09.03.27 - 2009.09.26)	(2008.03.27 - 2009.03.26)	(2007.03.27 - 2008.03.26)
운용수익	564,610,443	615,628,635	532,899,673
이자수익	404,221,875	491,860,082	306,483,377
배당수익	0	1,752,350	990,500
매매/평가차익(손)	160,388,568	122,016,203	225,425,796
기타수익	3,006,613	3,559,120	0
운용비용	89,935,896	89,117,252	65,542,007
관련회사 보수	89,711,896	89,117,252	65,542,007
매매수수료	224,000	0	0
기타비용	7,973,565	9,056,402	11,088,767
당기순이익	469,707,595	521,014,101	456,268,899
매매회전율	1,071.34	565.59	1,224.98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3기 2009년03월26일현재
제2기 2008년03월26일현재

투자회사명 : 모아드림10증권회사3호(채권혼합)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3,666,270		23,987,748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628,770		21,647,748	
2. 예치금				
3. 증거금	17,037,500		2,340,000	
대출채권		400,000,000		2,600,000,000
1. 콜론	400,000,000		2,6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028,266,543		8,693,695,466
1. 지분증권	149,301,570		11,560,500	
2. 채무증권	4,878,964,973		8,682,134,966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25,324,205		82,751,32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9,979,000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83,592,855		76,476,937	
4. 미수배당금	1,752,350		990,500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5,283,890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717,257,018		11,400,434,541
부 채				
운 용 부 채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74,825,876		694,059,88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19,987,500		2,340,00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14,149,387		16,585,591	
5. 기타미지급금	338,030,926		672,660,540	
6. 기타부채	2,658,063		2,473,753	
부 채 총 계		474,825,876		694,059,884
자 본				
1. 원 본	5,242,431,142		10,706,374,657	
2. 간접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0	
(발행주수 당기: 5,242,431,142 주)				
전기: 10,706,374,657 주)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5,242,431,142		10,706,374,65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717,257,018		11,400,434,541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3기 2008년03월27일부터 2009년03월26일까지
제2기 2007년03월27일부터 2008년03월26일까지

투자회사명 : 모아드림10증권회사3호(채권혼합)

과 목	제3(당)기		제2(전)기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97,171,552		307,473,877
1. 이 자 수 익	491,860,082		306,483,377	
2. 배당금수익	1,752,350		990,500	
3. 수수료수익	3,559,120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9,924,227		283,658,88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12,512,082		271,107,98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7,412,145		12,547,07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82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27,908,024		58,233,092
1. 지분증권매매차손	49,800,046		30,711,30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77,857,658		27,315,983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250,320		205,800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98,173,654		76,630,774
1. 운용수수료	23,404,412		17,212,923	
2. 판매수수료	63,012,483		46,343,121	
3. 수탁수수료	2,700,357		1,985,963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056,402		11,088,76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21,014,101		456,268,899
주당순이익(또는 주당순손실)		0.099384062		0.04261656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주,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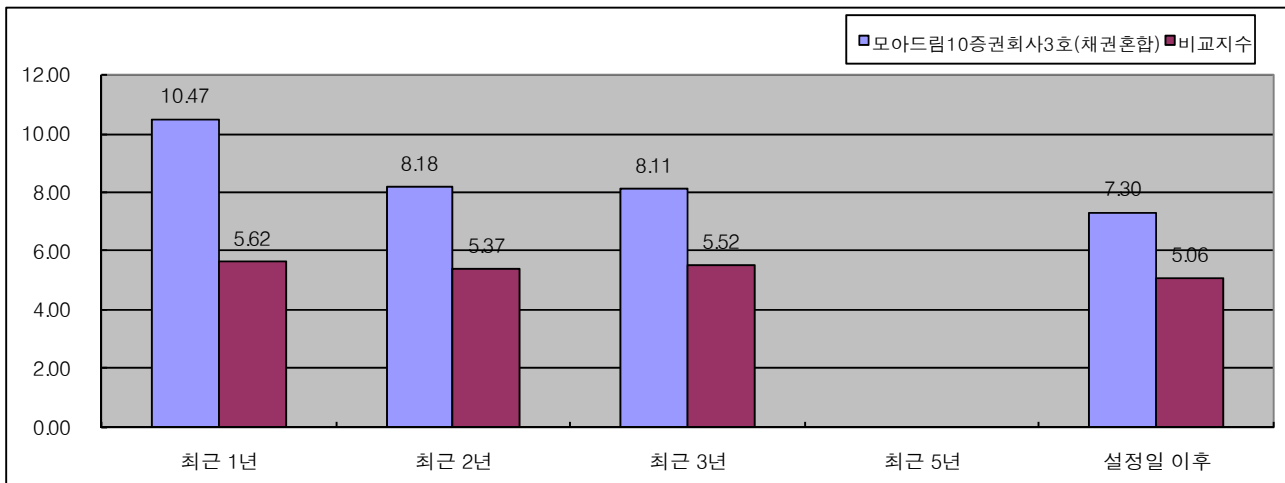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출자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3.27 - 2009.09.26	52	52	426	449	36	38	442	469
2008.03.27 - 2009.03.26	107	107	15	15	69	71	52	52
2007.03.27 - 2008.03.26	95	95	74	78	62	64	107	107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1.26 ~10.01.25	08.01.26 ~10.01.25	07.01.26 ~10.01.25		06.04.21 ~10.01.25
모아드림10증권회사3호(채권혼합)	10.47	8.18	8.11		7.30
비교지수	5.62	5.37	5.52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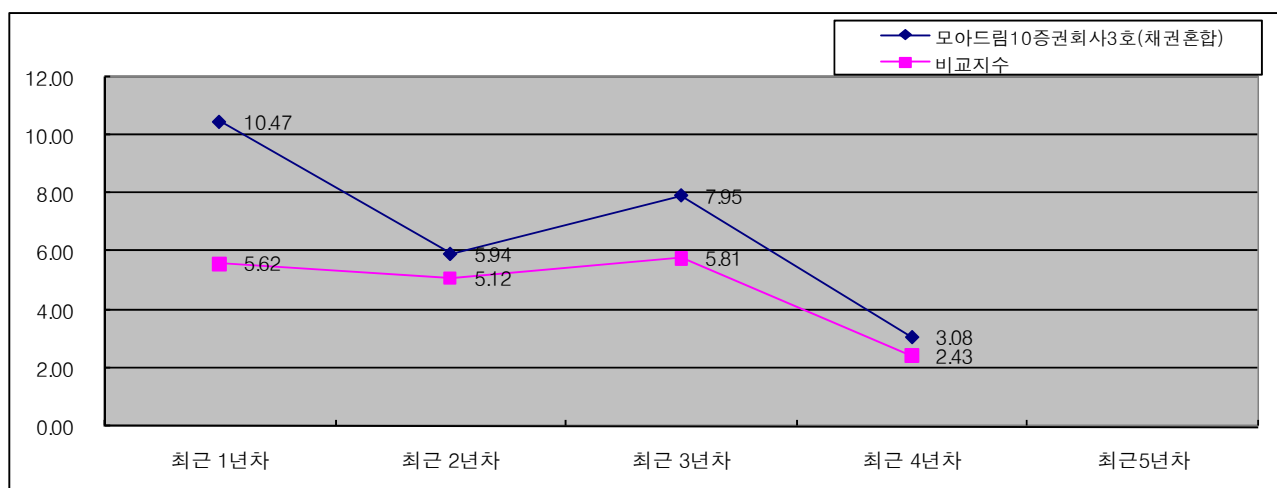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0.05 * [KOSDAQ]) + (0.8 * [1년\sim 2년(국공채)]) + (0.15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09.01.26 ~10.01.25	08.01.26 ~09.01.25	07.01.26 ~08.01.25	06.04.21 ~07.01.25	
모아드림10증권회사3호(채권혼합)	10.47	5.94	7.95	3.08	
비교지수	5.62	5.12	5.81	2.43	

(주 1) 비교지수 : $(0.05 * [KOSDAQ]) + (0.8 * [1년\sim 2년(국공채)]) + (0.15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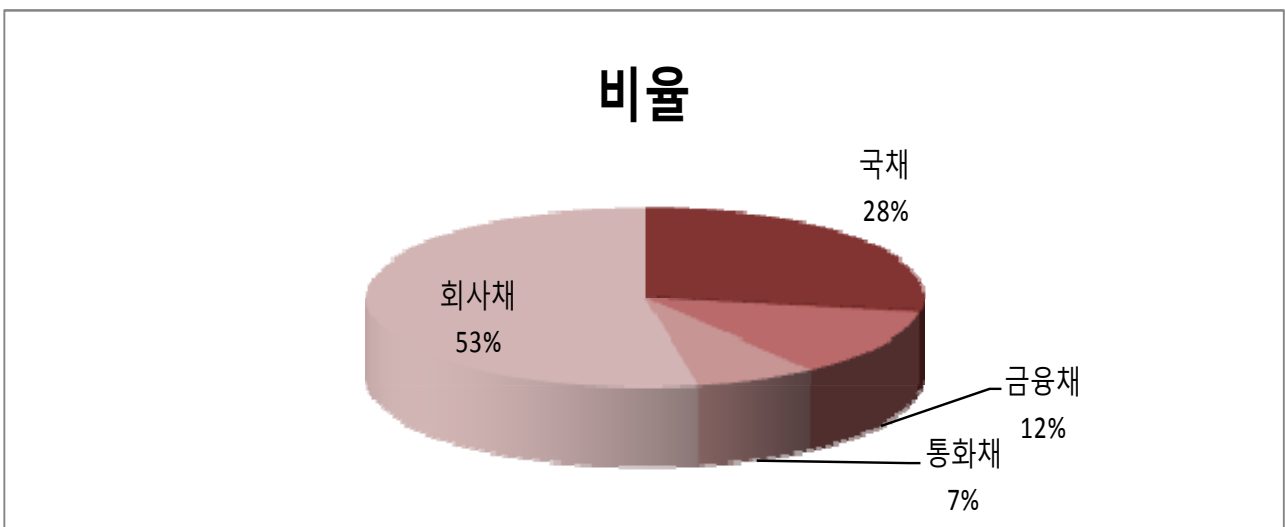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08.10.18 기준,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	484	0	0	2	0	0	0	0	51	60	603
	(0.85)	(80.24)	(0.00)	(0.00)	(0.35)	(0.06)	(0.00)	(0.00)	(0.00)	(8.51)	(10.01)	(100.00)
합계	5	484	0	0	2	0	0	0	0	51	60	603
	(0.85)	(80.24)	(0.00)	(0.00)	(0.35)	(0.06)	(0.00)	(0.00)	(0.00)	(8.51)	(10.0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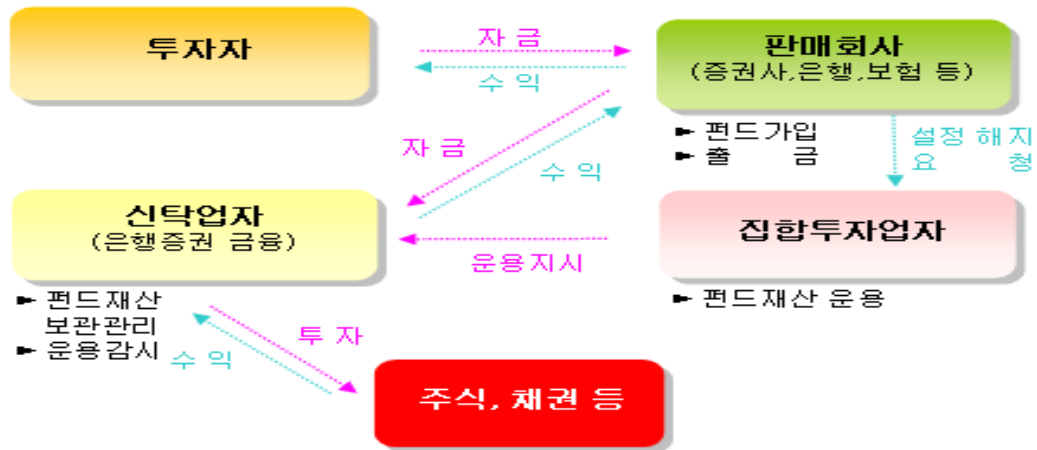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연락처 : 02-3770-1300, www.tyam.co.kr)
회사 연혁	-2000. 6.2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24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1 영업개시 -2000. 9. 5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0. 10.25 업계최초 펀드 회계부분 외부 위탁 -2001. 5. .28 업계 최초 채권 평가회사 가격정보 이용 시가평가 시행 -2001. 10. 31 수탁고 41,897 억 달성 -2010. 4. 1 사명변경((구) 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자본금	425 억원
주요주주현황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지분율 55.12% -동양오리온투자증권(주) - 지분율 23.53% -동양생명 (주) - 지분율 14.29% -동양선물(주) - 지분율 7.06%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의 설정. 해지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09.3.31	'10.3.31	항목	'09.3.31	'10.3.31
현금 및 예치금	282	35	영업수익	232	237
유가증권	61	371	영업비용	173	168
대출채권	5	4			
유형자산	4	3			
기타자산	78	88			
자산총계	430	501	영업이익	59	69
예수부채	0	0	영업외수익	0	0
기타부채	9	21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9	21	경상이익	59	69
자본금	200	200			
자본잉여금	121	121			
이익잉여금	98	150	법인세차감전	59	69
자본조정	0	0	손익		
기타포괄손익	2	9			
자본총계	421	480	당기순이익	41	69

라. 운용자산 규모

[2010.01.25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0,817	35,912	24,480	0	2,533	7,933	0	1,717	847	0	18,417	102,65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연락처 : 02-3770-8880, www.ksfc.com)
회사 연혁	- 설립일 : 1955년 10월 (한국연합증권금융) 1962년 7월 (한국증권금융으로 개칭) - 자본금 : 10억 (1969년 2월말) - 총자산 : 13조

(1) 주요업무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투자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간접투자 기구에 대한 신탁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 02-2168-0400, www.shinhanaitas.com)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6.15 회사 설립 - 2000.06.28 한국투자회사운용 수익증권 사무수탁대행계약 체결 - 2001.09.16 자체사옥 입주 - 2008.07.30 신한아이타스로 사명변경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www.koreab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15층 (02-739-3590, www.npricing.co.kr)
회사 연혁			
- 설립 일	- 2000.5.29	- 2000.6.20	- 2000.6.16
- 등록 일	- 2000.7.1	- 2000.7.1	- 2000.7.1
- 자본 금	- 50억원	- 30억원	- 47.5억
- 종업원수	- 43명	- 35명	- 39명
- 기 타		-한경-KIS채권지수발표 (2001.1.1) -금융투자협회-KIS-한 경기업어음지수 개발 (2002.7.2)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실시(2002.1)

(1)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이사회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투자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투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투자자총회

- 투자회사는 투자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투자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투자자의 총 주식의 수로

써 투자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회사 보수 또는 그밖의 수수료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투자회사 계약기간의 변경/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양도/ 환매금지투자회사로의 변경/ 주된 투자회사자산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주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으며, 주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회사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투자회사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포함)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1) 해산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 투자자총회의 해산결의 /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 / 투자회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주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자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회사의 해산일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정관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계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요주주	위탁거래	채권	6,392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 식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 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 지정
채권등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티지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2)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주식관련	1. 기본원칙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격월 주식운용역, 스트래τζ리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기업 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p>3. 위탁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별로 기여도 평가 점수에 따라 중개회사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채권관련등	<p>1.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재산의 이익도모 기여도에 따라 중개회사 선정 <p>2. 기여도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채권운용역, 스트래τζ리스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가 중개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기업분석 자료 등 펀드운용 및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p>3. 위탁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 내에서 중개회사 지정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정관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는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절취선

.....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동양 모아드림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